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안내

 **복권위원회** 이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용자대상

용자종류	대 상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 용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월평균소득이 251만원(‘19년 기준) 이하인 노동자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일 것 ※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노동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월평균소득 308만원(‘19년 기준) 적용
임금감소생계비	- 용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노동자로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소득이 3개월 이상 감소하였을 것 - 감소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에 비해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176만원(‘19년 기준)이하일 것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월평균소득 216만원(‘19년 기준) 적용
소액생계비	- 용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노동자로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용자대상 월소득이 직전달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용자대상 월소득이 176만원(‘19년 기준)이하일 것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용자대상 월소득 216만원(‘19년 기준) 적용
임금체불생계비	- 가동 중인(휴업포함) 임금체불 사업장의 재직노동자로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용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을 것 - 연간 소득액(배우자 합산)이 5,537만원(‘19년 기준) 이하일 것 ※ 건설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이고, 체불임금이 590,650원(‘19년 기준)이상일 것
◆ 노동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받은 노동자는 재직 중으로 판단함	

용자요건 및 한도액

용자종류	용자요건	신청기한	한도액
의료비	- 노동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든 비용 -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된 후 요양시설이용에 든 비용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1,000만원(실제 비용 내)
혼례비	노동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모든 비용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1,250만원
장례비	노동자 본인, 배우자, 노동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1,000만원
부모요양비	노동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모든 비용	진단서 발급일부터 90일 이내	부모(또는 조부모) 1명당 연 500만원
자녀학자금	- 노동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대학교 재학 자녀 포함	자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기간 중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자녀 1명당 연 700만원
임금감소생계비	노동자가 소속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임금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1,000만원(감소임금 범위)
소액생계비	노동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0만원
임금체불생계비	임금체불노동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생계유지에 드는 모든 비용	임금체불 상태가 해소되기 전으로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	1,000만원(체불임금 범위)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2,000만원
◆ 2종류 이상 용자신청 시 1인당 총 융자한도 2,000만원 이내			

용자조건

융자금리	연 2.5%		
보증방법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 보증료: 연 0.9%(임금체불생계비 1.0%) 별도 선공제(본인부담)		
상환기간	일반노동자	1년 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	1년 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 균등분할상환(고정)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연체, 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 · 외국인 · 재외동포 보증지원 불가			

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또는 정부24(http://www.gov.kr) 방 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전국 59개소) ※ 팩스접수 불가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관할지사 배정 ▶ 담당자 확인 ▶ 예비선정 ▶ 서류제출(예비선정자에 한함) ▶ 용자대상자 결정 ▶ 신용보증서 발행 ▶ 기업은행 인터넷 또는 모바일뱅킹을 통한 대출실행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고객센터(1588-0075) 내 Help-Line(헬프라인) 또는 사이버 감사실

